



이슈와 논점



이슈와 논점 | 제1420호 | 2018년 2월 14일 |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 발행인 이내영 | www.nars.go.kr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의 내용 및 향후과제

정도영*

1. 서론

정부는 지난 1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두 차례¹⁾의 종합대책에도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어금니 아빠 사건²⁾’에서 보듯이 보조금 수급자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결과이다.

정부의 보조금 부정수급 대책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 및 핵심개혁과제로 추진된 바 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복지 및 비복지 분야를 포함한 보조금 전반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보조금 사업의 성격상, 정부의 부정수급 대책은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정부가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보조금제도 및 부정수급 대책

(1) 보조금제도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교부하는 재원을 의미한다³⁾.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고보조사업은 1,569건, 금액은 66.9조 원 규모이며, 사업건수는 2013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보조금 규모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총 66.9조 원 중 자치단체 보조가 50.2조 원, 민간보조가 16.8조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37.8조 원(56.5%)으로 가장 크고, 농림수산 8.4조 원(12.6%), 환경 4.5조 원(6.7%), SOC 4.4조 원(6.6%) 등의 순이다.

보조금은 외부효과(External Effects)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s)가 있는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나, 일단 도입되면 보조사업자의 기득권으로 인식되어 축소·폐지의 어려움으로 인해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뿐 아니라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부정수급 등 책임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2013년 12월),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2014년 12월)
2) 13년 동안 12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금하여 고급 승용차 구입, 유흥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기초수급 자격을 유지하여 보조금 수급 대상이 된 사례이다.

[표 1] 국고보조금 현황

(단위: 조 원, 천)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규모(조원)	50.6	52.8	60.4	61.2	61.2	66.9
	세부사업(건)	2,552	1,904	1,956	1,591	1,637	1,569
(민간 보조)	규모(조원)	12.7	12.6	14.4	14.5	13.5	16.8
(지자체 보조)	규모(조원)	38.0	40.2	46.0	46.7	47.7	50.2

자료: 기획재정부

(2)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

정부가 제시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⁴⁾.

첫째,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보조사업 선정-집행-사후관리 등 단계별 부정수급에 대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⁵⁾’의 검증기능과 ‘공적자료’의 ‘e나라도움’ 연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내에 ‘부정수급 관리 TF’를 구성하여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부정수급 관리기능을 내실화하며,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지자체 자체운영 보조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둘째, ① ‘e나라도움’을 통한 선제적 검증, ② 유기적인 상시점검·단속, ③ 주민참여 자율감시의 ‘부정수급 3중 점검·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e나라도움’에 대한 부처별 자료입력 의무

4)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보조금 부정수급, 3중 점검·감시체계 구축으로 근절하겠습니다.」, 2018년 1월 11일자.

5) ‘e나라도움’은 2017년 1월 국고보조금 편성, 교부, 집행 등 주요기능 1차 개통 후 같은 해 7월 정산, 중복·부정수급 검증, 정보공개 포함 전면 개통되어 운영 중이다.

화, 교육확대 등을 통해 활용도를 제고하여 검증율을 활성화하고, ‘e나라도움’을 통해 검증되지 못한 부정수급은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점검·단속으로 적발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주민참여 자율신고체계를 구축하여 보조금 집행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가기로 하였다.

셋째,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모든 보조금에 대한 불시·무작위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부정수급 예방효과를 높이고,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중심으로 부정수급 빈발 4대 분야를⁶⁾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기획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각 부처의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관리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관리위원회’가 부처별 보조금 관리실적을 분석하여 매년 초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관리실적을 정부업무평가·보조사업 연장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하였다.

넷째,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활성화와 함께 국민인식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지역주민들의

6) 보건복지, 농림·수산, 고용·노동, 교육·환경 분야

자율적인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자는 신분·비밀 보장 및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제공하며, 전화, 인터넷, 앱, 대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3) 시사점

정부는 2013년 12월 복지사업 부정수급의 유형과 원인에 따른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감독 인프라 및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정누수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14년 12월에도 보조금의 투명성·효율성 강화로 재정건전성 제고를 목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이번 정부의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은 이전 대책을 대체하는 수준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대책을 유지하면서 관리체계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제2의 '어금니 아빠 사건'을 방지하기 위하여 'e나라도움'의 활용 정보를 확대하는 방안과 '보조금 관리위원회'의 관리 기능 강화,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등 사후적 제재를 강화한 것 등이 이전의 대책에 비해 강조되었다.

3. 향후과제

(1) 'e나라도움' 활용도 제고

정부가 제시한 부정수급 근절방안은 이전 대책에 비해 'e나라도움'을 역할이 크게 강조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 대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e나라도움'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은 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하여 보조사업자 정보를 'e나라도움'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의 대책에서 보듯이 아직 충분한 수준의 행정자료가 동 시스템을 통해 연계되지 않고 있다⁷⁾.

그러므로 금융재산 정보, 기부금 모집·사용 정보 등 행정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빅데이터 활용도를 제고하여 동 시스템의 부정 수급 적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보조금관리위원회 기능 강화

정부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부정수급 관리 기능 내실화를 위해 부정수급 관리 T/F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 동 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동 위원회의 설립 근거가 시행령에 마련되어 있는 점은 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우리나라 보조금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2015년 7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보조금관리위원회)⁸⁾에 동 위원회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동 위원회로 하여금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할 총괄·조정기구로서의 기능⁹⁾을 수행

7) 'e나라도움'은 자격검증 및 중복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국세청 등 22개 부처 31개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 중이다.

8) 제6조의3(보조금관리위원회) ①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관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9)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보조사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결정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 및 보조사

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보조금관리위원회가 보조사업 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등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행령에 마련하고 있는 근거 조항을 법률로의 상향 입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3) 사전적 감시 강화

보조금의 경우 한번 생기면 폐지하기가 어렵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적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사후적 감시 및 제재의 비중이 높은 현행 정부의 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보조사업의 사전적 검증 기능의 강화는 부정수급과는 연관성이 희박하다는 지적도 있으나, 보조사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부정수급 관리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보조사업의 사전적 관리 수단으로 2016년부터 적격성 심사제도¹⁰⁾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동 제도의 경우 아직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으나¹¹⁾ 법령

업자 선정 등의 타당성 확인에 관한 사항, 보조금의 중복 또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운영과 보조사업의 정비에 관한 사항,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10) 동 제도는 신규보조사업의 적격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전 조사를 통해 보조사업 추진여부의 타당성을 사전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11) 정부는 동 제도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5년 5월, 보조사업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당해 사업의 적격성 심사를 반영한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15-92호)한 바 있으나, 개정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상 근거 없이 적격성 심사가 진행될 경우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보조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격성 심사제도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입법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적격성 심사 대상 사업의 경우 심사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첨부서류에 포함하도록 하고, 보조금 예산 편성 과정에 적격성 심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등 동 제도 도입의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4. 나아가며

정부는 그동안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보조사업의 특성상 사업 범위가 광범위할 뿐 아니라 보조사업 별로 수급 체계가 매우 복잡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통해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보조금 관리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e나라도움’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앞으로 정부의 기대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효과적인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 「이슈와 논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정보 소식지입니다.